

의안번호	2212678
의 퇴 인	차지호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계번호	25B49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9,400만원(연평균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국가 탄소예산 산출 (안 제22조의2제5항제1호)	194	-	-	-	-	194	39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탄소예산 산출 주기,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신설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제1항)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함(제2항) 1. 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국제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직하고 있는 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함.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봄(제4항)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함(제5항) 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2	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 2 (기후과학위원회)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경우 위원 보수 또는 수당 지급, 회의 운영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사무처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서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 업무추진계획, 사무처 조직 및 정원 등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연 번	조·항(조제목)		추 계 여 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제5항제1호 - 국가 탄소예산 산출	○	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기후 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산출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 추계
2	안 제70조 (기금의 용도)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 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 업의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 점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 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 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¹⁾을 산출할 경우,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예산 산출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본 추계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²⁾ 국가 탄소예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개정안은 탄소예산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탄소예산 산출과 관련된 다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일부 법률안에서 탄소예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음

2) 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종전의 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2026년에만 1억 9,400만원이 발생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 탄소예산 산출 (안 제22조의2제5항제1호)	194	-	-	-	-	194	39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탄소예산 산출 주기,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탄소예산 산출 주기,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